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월 1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 1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로과장 배치열)

가. 제안이유

○ 손궤자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8124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 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다. 도로복구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함.(안 제5조)

마.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환급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시장은 도로를 손궤한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한 후 나중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12호
의결 년월일	2008. 1. 23 (제141회)

제출년월일 : 2008. 1. 1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손궤자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8124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 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하며,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다. 도로복구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함.(안 제5조)

마.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환급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시장은 도로를 손궤한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한 후 나중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첨　부** :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 및 이에 인접되어 나중에 손궤가 예상

되는 부분을 말한다.

5.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및 별표 2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④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의 단서 및 원인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손궤부분에 대한 바닥 폭을 최소한 1미터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한 개 차로 또는 전폭으로 한다.

3.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 또는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산출단가를 매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의 소요물량이 당초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또는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에는 초과하여 소요된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의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

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나중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3조제2항 관련)

종 별	부 호	적 용 면 적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1	표 층: 10㎝ 중 층: 15㎝ 기 층: 20㎝ 보조기층: 40㎝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2	표 층: 5㎝ 기 층: 15~20㎝ 보조기층: 30㎝	지선도로
	A-C	표 층: 5㎝ 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	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1	표 층: 20㎝ 보조기층: 20㎝	폭 6m 이상
	C-2	표 층: 15㎝ 보조기층: 15㎝	폭 6m 미만
보 도	일반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6㎝ 모 래: 3㎝ 기 층: 10㎝	
	유색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6㎝ 모 래: 3㎝ 기 층: 10㎝	
	대형고압 (오나멘트)	대 형 고 압 표 층: 4.5㎝ 몰 탈 (1 : 3): 3㎝ 기초콘크리트(5종): 10㎝	
	소형고압	소형고압브럭표층: 6㎝ 모 래: 4㎝ 기 층: 10㎝	
	화 강 석	화 강 석 표 층: 3㎝ 몰 탈 (1 : 3):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20㎝ 기 층: 10㎝	
	투 수 성 아스팔트	투수성아스콘표층: 10㎝ 기 층: 10㎝ 모 래: 5㎝	
	그 밖의 사항	기존 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그 밖의 도로시설물		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① 각 종별 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의 두께를 20cm씩 추가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단면의 기존 보도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3조제2항 관련)

1.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에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포장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에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의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건설교통부 시공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8.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및 준공검사 전 포장두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 1990. 10. 06 조례 제1061호
개정 1997. 08. 01 조례 제1536호
개정 1999. 09. 08 조례 제1690호
전문개정 2006. 01. 13 조례 제21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자 또는 「도로법 시행령」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법 시행령」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도로를 손궤하는 부분을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제3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미터 40센티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제4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과태료) ①시장은 제6조제2항의 원인자 또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 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과태료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0.10.06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칙 (1997.08.01 조례 제15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13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